

<p>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법 집행국 존 D. 마쉬(John D. Marsh) 국장</p> 	<p>정보 공고</p>	
<p>제목: 수감자와 수감자의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 간의 대화를 도청하고 녹음하는 행위의 금지</p>	<p>번호 2023-DLE-03</p>	<p>정보 문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a href="mailto:dojcsp@doj.ca.gov">dojcsp@doj.ca.gov</a></p>
	<p>날짜: 2023/06/27</p>	

대상: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의 모든 경찰국장, 보안관, 책임자

직접 이루어지는 대화이든,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와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수감자의 권리를 모든 법 집행 기관에서 세심하게 보호해야 함을 알리려는 공지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대화가 녹음, 모니터링되지 않게 하거나 들리지 않게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헌법상 보호되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법 집행 기관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얻지 않은 채로 수감자와 유면허 의사의 대화 또는 수감자와 종교 고문의 대화를 전자적으로 도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고에서는 수감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종교 고문 또는 의료 전문가와 비공개로 상담할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헌법 및 법령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공고에서는 법 집행 기관에서 기관 관행과 더불어 수감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상업 기관의 관행이 이러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과 관행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공고는 수감자의 모든 의사 소통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감자의 권리 및 기타 보호되는 대화에 대한 권리에 적용되는 법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얻지 않은 채로 수감자와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 간의 대화를 전자적으로 도청하고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형법 § 636, 하위 항목 (a).)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금 대기 구역, [기타] 대기 구역 또는 대기실 등,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가 존재하는 장소와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인 간의 대화를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도청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항목은 우연히 듣게 되거나, 법정 또는 판결 절차에서 이용되는 다른 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 636, 하위 항목 (b).)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또한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헌법에서는 모두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소통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Barber v. Municipal Court (San Luis Obispo) (1979) 24 Cal.3d 742, 751; U.S. 수정 헌법 제6조; 캘리포니아 헌법 제 1조, § 15.*)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가 이런 저런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장하는 개입 목적이 무엇이든 의뢰인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Barber, supra, at p. 753.*) 변호사-의뢰인의 비밀 대화에 법 집행 기관이 입회하거나 구금 시설 운영 방식으로 인해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Id. at p. 752, citing Ex Parte Qualls (1943) 58 Cal.App.2d 330.*) 이로 인해 대화를 모니터링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 집행 기관이 믿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수정 헌법 제6조,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 수감자와 다른 사람 간의 비보호 대화를 모니터링할 집행 기관의 권리

하지만, 모든 당사자가 정당하게 동의한 경우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이 적법하게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대화(예: 수감자와 수감자의 종교 고문, 유면허 의사 또는 변호사 간의 대화) 또는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화(예: 수감자와 변호사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법 집행 기관은 유효한 동의를 통해 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수감자는 아웃바운드 전화 통화에서 프라이버시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United States v. Van Poyck (9th Cir. 1996) 77 F.3d 285, 290–291.*) 수감자의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양식에 서명하거나 명확하게 배치된 표지판을 읽음으로써 동의할 수 있습니다. (*Id. at pp. 287, 292.*)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전화 통화의 경우 그 녹음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사전 녹음된 경고도 동의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대화가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후에 다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arney v. Salomon Smith Barney, Inc. (2006) 39 Cal.4th 95, 118, 각주 생략.*)

### 수감자와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 간의 대화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

아래의 모범 사례 권고 목록은 모든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기소의 무결성을 지키면서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I. 통신 서비스 모범 사례

1. 지속적인 녹음 금지 목록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처음 출두할 때 피고인 측 변호사의 전화 번호를 받고, 해당 전화 번호를 녹음 금지 목록에 입력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법원, 피고인 측 변호사, 수감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사는 휴대 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용 전화번호를 녹음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모든 변호사-의뢰인 통화 녹음을 방지하기에 부족합니다.
2. 수감자는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와 비밀 통화를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녹음되지 않는 전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화 사용을 허가 받기 전에 수감자는 피고인 측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가 수감자와 비밀 통화를 하는 것을 승인/허가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수감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녹음되지 않는 전용 전화선으로 변호사, 종교 고문 또는 의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는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기관의 재량에 따름).
3. 녹음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각각의 전화기에는 영어, 스페인어, 기타 자신의 관할권의 주요 언어로 공지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표지판은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로 전화하는 모든 전화 번호와 대화는 녹음(기록)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모니터링 및 녹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다른 전화로 변호사, 의사, 종교 고문과 전화할 때에는 전화 통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녹음하지 않습니다.”
4. 변호사, 종교 고문, 의사에게 모니터링되지 않는 전화를 걸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수감자에게 알렸으며, 수감자가 적절하지 않게 걸려온 전화를 포함하여 모든 통화가 녹음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를 받고 이에 동의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5. 수감자로부터 녹음되는 전화를 수신하는 당사자가 변호사, 의사 또는 종교 고문이며 이들이 전화 통화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게 해야 합니다.
6. 녹음된 전화 대화를 검토하기 위한 최소화 프로토콜(도청과 마찬가지로)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7.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및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로부터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변호사나 의사의 업무용 전화 번호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이 번호를 녹음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II. 대면 대화 시의 모범 사례

1. 수감자가 변호사, 의사, 종교 고문을 만날 수 있도록 비공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수감자가 변호사, 의사, 종교 고문과 만날 때 이들과 다른 사람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도청이나 엿들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정보 공지에 대한 질문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dojcsp@doj.ca.gov](mailto:dojcsp@doj.ca.gov))에 문의하십시오.